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김윤덕・임오경・양문석

이재관 • 신영대 • 최민희

문진석 · 강유정 · 이원택

이연희 · 이건태 · 홍기원

김교흥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,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음악산업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제2호 또는 제6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	제22조(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
항 등) ① 노래연습장업자는	항 등) ①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	
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이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
	제2호 또는 제6호를 준수하기
	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
	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
	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
	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
	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
	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
	<u>하여야 한다.</u>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